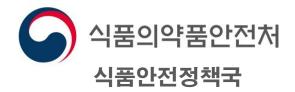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소비안전과 2016.9





내용

- 1. 식품 표시 개요
- 2. 식품등의 표시기준
 - | . 총칙
 - Ⅱ. 공통표시기준
 -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Ⅳ.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3. 향후 정책 방향

식품 표시란?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식품위생법」제2조제7호
- ☞ 식품및축산물등의 용기 또는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 「식품표시법」제정법률안 제2조제2호(2016.4.21)

Food Labelling

식품 표시의 중요성

- 소비자 개인이 외부효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후생에 영향
 - 소비자의 식품소비는 환경, 보건, 노동생산성, 산업구조에 직·간접적인 영향 초래
 - 개인의 소비가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식품표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 (예시) 영양표시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편익은 비용에 비해 높지 않지만 국민건강, 노동생산성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
- 제품 정보는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및 건전한 거래 확보 환경 조성
 - 산업체 측면에서 식품표시는 제품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당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이 가능
 -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활

식품 표시의 중요성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
 - * 비대칭성 :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면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소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러한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결과로 시장실패 초래
 - * 건강에 위해한 성분의 존재, 영양정보 등 공공재적 성격의 정보 등 생산,판매자가 구매자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개입을 통한 식품표시제도는 이를 보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식품 표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 소비자의 입장
- 상품에 표시된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를 통하여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양으로 누구에게서 구입하는가를 결정
- ⇒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생산자의 입장
- 상품의 공정한 거래는 사회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소비생활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침
- ⇒ 생산자는 상품 · 용역을 판매하여 사업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을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넓은 상품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 허위·과대 표시를 배제하여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 권리에 부응하는 적정한 표시를 하여야 함

식품 표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 정부입장
 -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입장에서 관리 주체
 -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 관리하여야 함
 - ⇒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의 법률이나 기준에 의해 식품의 표시를 관리하고 있음



식품 표시의 기능

- 제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
 -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및 함량, 내용량(중량, 용량 등)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원산지
- 소비자를 위한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 제공
 - 보관 및 취급방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영양표시(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나트륨 등]
- 식품 판매, 홍보,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 저 지방, 저 콜레스테롤
 - 식이섬유 풍부 등

식품위생법 표시관련 규정

규정	표시 내용	
제10조 표시사항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의무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 식품의 영양표시 등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대해 영양표시 규정	
제12조의2 유전자재조합식 품등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규정	
제12조의3 표시광고의 심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규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 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의 허위, 과 대, 비방의 표시 광고 금지 규정	

표시관련 타법 사항

- 먹는샘물등 먹는물관리법(환경부)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 포장양곡 양곡관리법(농식품부)
- 도로명표시 도로명주소법(행정자치부)
- 전자상거래상 표시 전자상거래등에서 상품등의 정보제공(공정위)
- 전통식품품질인증표시 식품산업진흥법(농식품부)
- 술품질인증표시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 19세미만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 민속주, 주세면세용, 군납용 등 용도표시 주세법(국세청)

식품등의 표시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구성

- l. 총 칙
- 1. 기준의 목적 2. 기준의 구성 3.용어의 정의 4. 표시대상 5. 기준의 적용
- Ⅱ. 공통표시기준
 - 1. 표시방법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1. 식품 2.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별지 2」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 [도 1] ~ [도 5]
 - [丑 1]~[丑 6]

총 칙

총칙

용어의 정의

I. "주표시면"

용기 ·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으로서 [도 1]에 따른 면

2. "정보표시면"

용기 · 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으로서 [도 1] 에 따른 면













총칙

표시대상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함
 -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첨가물
 -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수입식품 포함)
 -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고 가맹사업으로서 그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용기·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는 식품
 - 2. 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제품을 포함한다)

표시방법

1.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III. 개별표시 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cm²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음

[사례]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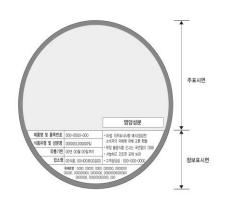
- 2. 외국어의 혼용 또는 병기
 -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가능
- 3. 주표시면
 -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한다)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

표시방법

4. 정보표시면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 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 품 명	000 00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지	○○ 길 ○○	시설에서 제조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 해에 대해 교환, 환불
내 용 량	000 g	에에 대해 표현, 현물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원재료명	OO, OOOO, OOOOO, OOOOOO, OOOOO OO*, OOO*, OO*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국업체 구기묘시시장 에시기시골이고 근모은 것에 보관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
성분명 및 함량	000(00 mg)	
용기(포장) 재질	00000	영양성분*
품목보고번호	00000000000-0	[주표시면 표시 가능]



표시방법

5. 활자크기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정보표시면의 면적([도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타법포함)사항만을 표시



하여야 함



10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후 남은 공간 업체 활용 가능

면적 부족 시 의무표시사항만 표시

표시방법

8.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 가공업소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OEM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함(다만, 농.임.수산물, 주류는 제외)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

표시방법

9. 세트포장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함(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표시방법

- 10. 원래 표시사항 변경 금지
 -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다만,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시하여야 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사례)

(X) 식품소분업소에서 재포장한 포장지에 원래표시 사항에 없는 내용 추가

표시방법

- 13.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함
 -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2) 통. 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소에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재료용 제품의 경우
 - 4)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 하는 경우
 - 5)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마. 합성향료 착색료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 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인 경우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 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 이외의 명 칭을 표시하여서는 안됨 (예시) "MSG" 표시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제품명

-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
- 2) 제품명에 상호 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 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 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 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예시) 흑마늘 ○○(흑마늘 ○○%)

제품명

- 4)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 외래어의 한 글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시한 제품명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5)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 나) <mark>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mark>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
 - 다]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업소명 및 소재지

- 가) 식품등 제조.가공업
 - 영업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식품 제조·가 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위 탁을 의뢰한 업소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함

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 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유통전문판매업 : 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1)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 등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동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 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함
- 2) 유통기한 등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유통기한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3)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 께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내용량

- 1)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여야 함
 -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 별도 규정
- 2) 섭취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 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함
- 3)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에 대하여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 는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 (예시) 100 g(240 kcal)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	50g 0 ð	9%
	50g 초과 100g 이하	4.5g
	100g 초과 200g 이하	4.5%
	200g 초과 300g 이하	9g
	300g 초과 500g 이하	3%
	500g 초과 1kg 이하	15g
	1kg 초과 10kg 이하	1.5%
	10kg 초과 15kg 이하	150g
	15kg 초과	1%
00 බර	50mL 0 ð	9%
	50mL 초과 100mL 이하	4.5mL
	100mL 초과 200mL 이하	4.5%
	200mL 초과 300mL 이하	9mL
	300mL 초과 500mL 이하	3%
	500mL 초과 1L 이하	15mL
	1L 초과 10L 이하	1.5%
	10L 초과 15L 이하	150mL
	15L 초과	1%
1	l .	I

원재료명

1) 식품에 대한 표시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 가능
- 나) 원재료명은 법 제7조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
- 다)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청사과]
- 라)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경우에는 그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농축액, ○○추출액, ○○발효액, 당화○○]

원재료명

- 마)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제품명으로 그 복합원재료의 종류, 유형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한한다)을 표시하고 말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함
- 바)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 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함량으로 표시 가능

(예시) 딸기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예시) 딸기 바나나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딸기 ○○%, 바나나 ○○% 또는 배합 함량 딸기 ○○%, 바나나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u>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u>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I. 1. 나. 27) 의 표시사항 중 '주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III. 1. 나.와 III. 2.의 표시사항 중 '품목보고번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신규 보고품목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III. 1. 가. 중 1회 섭취참고량 신설 및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I. 3. 1) 다)의 개정 규정(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금속제: 2015년 1월 1일
- 2. 고무제 : 2016년 1월 1일
- 3. 합성수지제: 2017년 1월 1일
- 4. 나머지 재질 및 2가지 이상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로 구성된 제품 : 2018년 1월 1일

부 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III. 1. 가. 중 1회 섭취참고량 신설 및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법령·자료→고시·운령·예규→고시전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행정규칙
 → "식품등의 표시기준" 검색)에서 확인 및 다운 가능합니다.
- 제품에 표시할 한글표시사항 전체를 확인해 주세요|
 - ☞ 식품등의 표시에 대하여 국가(식약처 등)에서 사전 심의, 검수,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시사항을 잘못 표시한 경우 스티커를 사용하여 수정가능한가요?
 -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안전과 관련없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 1차 상담은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발표자료 및 식품표시 관련 정보는

☞ 식약처 홈페이지 (fi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식품안전→식품안전 정보 →식품등의 표시)